P - 56 - 2012

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

2012. 5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대한기계학회 서상호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

○ 제·개정 경과

- 2010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
- 2012년 5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
- 관련규격 및 자료
- Safe use and storage of cellular plastics, HSE, 1996
- 안전보건기술지침 「발포폴리스티렌의 취급 시 화재예방가이드」
- 안전보건기술지침 「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 술지침」
- 산업안전보건용어사전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2006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5월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P - 56 - 2012

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발포플라스틱의 보관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화재 사고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발포플라스틱을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해 보관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발포플라스틱(Cellular plastic)"이라 함은 발포제를 혼합한 후, 발포시켜 세밀한 기포상태의 구조를 지니게 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. 발포플라스틱의 예로는 스펀지, 스티로폼, 우레탄폼 등이 있다.
- (나) "발포제(Blowing agent)"라 함은 단독 또는 다른 물질과 조합으로 플라스틱 및 고무 내 다공질 구조(Cellular)를 유도하는 첨가제를 말한다.
- (다) "인화성 물질(Flammable substance)"이라 함은 대기압 하에서 인화점이 섭씨 65도 이하인 가연성 액체를 말한다.
- (라) "내화구조"라 함은 벽, 기둥, 마루, 지붕 등의 구조부재가 불연성 또는 준불연성 재료로 시공되고 NFPA(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)

220: Standard on Types of Building Construction에 규정된 등급 이상의

P - 56 - 2012

내화성능을 갖춘 구조를 말한다.

- (마) "방화문"이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문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보관시설의 일반적 주의 사항

4.1 보관 장소의 위치

- (1) 발포플라스틱 및 발포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은 그 생산 및 사용 장소와 보관 장소를 따로 분리해서 설치해야 한다.
- (2) 발포플라스틱의 보관시설로써 가장 안전한 시설은 주변과 분리된 별도의 단층 건물이다.
- (3) 별도의 보관용 건물은 작업장으로부터의 대피 및 피난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.

4.2 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장소

- (1) 발포플라스틱은 화재 발생 시, 열기 및 연기가 작업장에 영향을 가장 덜 미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.
- (2) 발포플라스틱을 솔벤트나 접착제와 같은 인화성 물질과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된다. 이는 보관 장소의 내화구조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.
- (3) 발포플라스틱의 부스러기, 천 조각, 포장재 자투리 등과 같이 포장되지 않은 채 널려 있는 재료들은 화재의 위험성이 특히 높으므로 자루나 용기에

P - 56 - 2012

밀폐시켜 보관해야 한다.

4.3 보관 장소의 신축 시 주의사항

- (1) 건물의 방화구획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발포플라스틱을 운반하는 승강기는 연기를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
- (2) 컨베이어나 활송장치(chute)로 발포플라스틱을 운반하는 경우, 각 층의 개구부는 연기를 차단하는 셔터가 설치되어야 한다.
- (3) 통행을 위한 칸막이벽의 개구부는 방화문으로 설치되어야 한다.
- (4) 내화구조의 벽체는 벽돌이나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공 장의 경우, 벽돌이나 콘크리트블록은 내화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손상에 강하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내화성능을 갖출 수 있다.

4.4 임시저장 시 주의 사항

- (1) 건설 현장과 같이 사용할 발포플라스틱을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, 야외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물의 출입구나 화기로부터 멀리 위치시켜야 한다.
- (2) 상부 뚜껑이 없는 보관함은 고의적인 방화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.
- (3) 화물용 컨테이너와 같이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별도의 금속 용기가 임시 저장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.
- (4) 대량의 발포플라스틱을 임시로 건물 내부에 보관해야 할 경우, 이를 위해 별도의 방이 있어야 하며 발포플라스틱을 운반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시 잠 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.
- (5) 위의 방식으로 보관하는 발포플라스틱의 양은 인력작업을 기준으로 해야

P - 56 - 2012

한다.

4.5 발포플라스틱 보관 장소에의 접근

- (1) 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장소가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.
- (2) 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장소가 피난이나 대피를 위한 통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.
- (3) 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장소에 출입하는 인원이 최소한도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4.6 보관 시설 내에서의 주의 사항

- (1) 포장하지 않은 발포플라스틱을 쌓아 올려 보관할 경우, 안정적으로 적재해야 한다. 작은 조각은 선반에 보관할 수 있다.
- (2) 보관시설 내 통로는 80 cm 이상이어야 한다.^{주1)}
- (3) 통로의 확보를 위해 바닥에 통로표시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4) 통로에 막다른 골목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 위치를 정해야 한다. 끝이 막힌 통로는 한 방향으로만 대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증가한다.
- (5) 발포플라스틱을 쌓아 올린 맨 윗부분과 천장, 연기감지기 또는 조명과는 최소 1 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. 특히,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지점에서는 반드시 이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. ^{주2)}
- (6) 백열등에 보호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, 발포플라스틱을 쌓아 올린 더미가 백열등의 아래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.
- (7) 발포플라스틱을 쌓아 올린 더미가 증기난방용 배관이나 전기 배선을 보호

P - 56 - 2012

하기 위한 벽이나 기둥을 막도록 해서는 안 된다.

- (8) 보관시설로 반입한 발포플라스틱의 자투리는 통 또는 자루에 넣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주1), 주2)의 수치는 Safe use and storage of cellular plastics, HSE, 1996에서 인용하였음

4.7 다른 시설이 있는 건물에서의 보관 시 주의사항

- (1) 다른 시설이 있는 건물에 발포플라스틱의 보관시설을 설치할 경우, 내화구조의 칸막이벽으로 다른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.
- (2) 보관시설의 출입문은 최소 30분 이상의 방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,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. 주3)
- (3) 발포플라스틱의 보관시설이 숙박이나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건물 또는 여러회사가 입주한 건물에 위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
- (4) 발포플라스틱의 보관시설이 다층 건물에 위치할 경우, 최상층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5) 불가피하게 발포플라스틱의 보관시설이 다층 건물에서 어떤 층의 아래에 위치할 경우, 화재경보기와 연결된 자동 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.
- (6) 발포플라스틱의 보관시설이 지하실에 위치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.

주3)의 수치는 Safe use and storage of cellular plastics, HSE, 1996에서 인용하였음

5. 발화 원인별 주의 사항

5.1 노출된 불씨

P - 56 - 2012

노출된 불씨는 발화의 잠재적 원인이며 따라서 보관시설에서 불씨가 생겨나 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5.2 흡연

- (1) 발포플라스틱의 생산, 사용, 보관을 하는 장소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.
- (2) 가능하다면 흡연의 전면 금지가 화재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.
- (3) 흡연금지가 불가능할 경우, 발포플라스틱의 작업장 및 보관시설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해야 한다. 이 경우, 흡연장소에는 적절한 재떨이와 소화기를 비치한다.
- (4)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는 "흡연금지"라는 경고표지를 부착한다.

5.3 난방

- (1) 발포플라스틱의 사용이나 보관과 관련된 장소에서의 난방은 다음 방식이 바람직하다.
 - (가) 온수를 이용한 방열기에 의한 난방
 - (나) 저압증기를 이용한 방열기에 의한 난방
 - (다) 대류식 방열기에 의한 난방
 - (라) 기름을 채운 축열식 패널에 의한 난방
- (2) 고체연료, 가스, 기름을 연소하는 가열기 부분은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.

P - 56 - 2012

(3) 가스나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휴대형 또는 이동 가능한 전열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.

5.4 전기기구

- (1) 모든 전기 기구에는 과전류 차단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.
- (2) 가능한 한 전기기구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야 하며, 분진 또는 부스러기에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.
- (3) 백열전구는 적절한 보호덮개가 씌워져 있어야 한다.
- (4) 전기 기구의 내부 또는 표면의 온도가 150 ℃를 넘는 경우, 분진 또는 부스러기가 이곳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^{주4)}
- (5) 대부분의 발포플라스틱은 단열성능이 뛰어나므로 전기기구에 밀착되면 발화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.
- (6) 정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스파크는 발화의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접지를 통해 스파크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.
- (7) 효과적인 접지가 불가능할 경우, 정전기 제거장치를 사용해야 한다.

주4)의 수치는 Safe use and storage of cellular plastics, HSE, 1996에서 인용하였음

5.5 운송기기

- (1) 발포플라스틱의 보관시설에서는 전용 운송기기를 사용해야 한다.
- (2) 다른 지점으로 가기 위해 운송기기가 발포플라스틱의 보관시설을 통과해서 는 안 된다.

P - 56 - 2012

- (3) 내연기관에 의해 작동되는 운송기기는 특별한 처리가 없는 경우, 엔진의 고 온 부위나 배기가스에 의해 발포플라스틱이 발화될 수 있으므로 운행을 하 지 않도록 하고 전기로 작동하는 운송기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인력작업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4)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운송기기의 경우, 배터리의 충전이 발포플라스 틱의 보관시설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.

5.6 인화성 물질

- (1) 인화성 물질은 필요시를 제외하고는 발포플라스틱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되어야 한다.
- (2)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장소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.